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2. 3. 23.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3월 4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2년 3월 5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88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2. 3. 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정진)

가. 제안이유

- 우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주민에 대한 수혜범위 확대와 효율적인 기금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생활안정자금에 대하여(안 제3조)

-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의 조항 신설로 용자 대상확대(안 제3조제1항제4호)
-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의 조항은 위 제1항제4호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삭제(안 제3조제2항제1호)
- “제2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용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재학생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는 조항의 학자금대출은 시중금융기관에서 쉽고 빠르게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이며,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구별하기 어려워 삭제(안 제3조제3항)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일 경우라도 사업내용이 거리질서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에는 용자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행상·노점 등의 불법상행위 사전 방지(안 제3조제6항)

나. 용자한도 및 이율에 대하여(안 제5조)

- “가구당 용자한도액은 소득지원금은 2,000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하되 용자금의 대부율은 연 5%로 한다”는 조항을 자금지원 확대 및 실질소득 향상을 위하여 “소득지원금 4,000만원 이하, 안정자금 2,000만원 이하로 용자한도 2배 및 대부율을 연 3%로 감축”함.

다. 대출 및 상환금회수에 대하여(안 제11조제2항)

-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제11조제1항의 내용에 포함되므로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민창규)

동 개정조례(안)은 1996년 7월 8일부터 적용한 현행 기금의 대출금리를 현 시중은행의 낮은 대출금리와 기금의 운영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금리를 인하하고 기 대출자에게도 상환잔액에 대하여 인하된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주민의 금융비용을 경감시키고 대출받는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대출한도를 2배 증액토록 한 것은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수혜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0
----------	-----

제출년월일 : 2002. 3. 4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우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주민에 대한 수혜범위 확대와 효율적인 기금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생활안정자금에 대하여(안 제3조)

-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의 조항 신설로 용자 대상확대(안 제3조제1항제4호)
-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의 조항은 위 제1항제4호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삭제(안 제3조제2항제1호)
- “제2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용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재학생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는 조항의 학자금 대출은 시중금융기관에서 쉽고 빠르게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이며,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구별하기 어려워 삭제(안 제3조제3항)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일 경우라도 사업내용이 거리질서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에는 용자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행상·노점 등의 불법상행위 사전 방지(안 제3조제6항)

나. 용자한도 및 이율에 대하여(안 제5조)

- “가구당 용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000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하되 용자금의 대부율은 연 5%로 한다”는 조항을 자금지원 확대 및 실질소득 향상을 위하여 “소득지원금 4,000만원 이하, 안정자금 2,000만원 이하로 용자한도 2배 확대 및 대부율을 연 3%로 감축”함.

다. 대출 및 상환금회수에 대하여(안 제11조제2항)

-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제11조제1항의 내용에 포함되므로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3조, 제5조, 제11조

나.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결과 : 제출된 의견없음.

마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내용 중 “영세민”을 “주민”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제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3호의 내용중 “무주택자에 대한”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5호의 내용중 “사업”을 “생계”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일 경우라도 사업내용이 거리질서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중 소득자금 “2,000만원 이하”를 “4,000만원 이하”로, 안정자금 “1,000만원 이하”를 “2,000만원 이하”로 하고, “연 5%”를 “연 3%”로 한다.

제11조제2항은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의 “사업추진상황을 반기별 1회”를 “필요시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한다.

제14조제2항의 “융자금으로”를 “융자금 및 기타 경비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대출된 융자금 상환잔액에 대하여 개정된 조례의 이율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융자대상) ①(생략) 1~3(생략) (신설) ②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1. <u>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u> 3. <u>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u> 5. <u>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u> ③제2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u>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재학생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u>라야 한다.<개정 1999. 10. 8> ④~⑤(생략) (신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u>2,000만원 이하</u>, 안정자금은 <u>1,000만원 이하</u>로 하되 융자금의 대부율은 <u>연 5%</u>로 한다.	제1조(목적)<u>주민</u>..... 제3조(융자대상) ①(현행과 같음) 1~3(생략) <u>4.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u> ②<u>생활안정자금</u>(.....) 1. <u>삭제</u> 3. <u>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u> 5. <u>생계</u>..... ③<u>삭제</u> ④~⑤(현행과 같음) ⑥<u>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일 경우라도 사업내용이 거리질서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u>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u>4,000만원</u>..... <u>이하</u>.....<u>2,000만원 이하</u>.....<u>연 3%</u>.....

현행	개정 (안)
제11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①(생략) ②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①(현행과 같음) ②(삭제)
제12조(지도 감독) ①구청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반기별 1회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 감독) ①.....필요시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제14조(세입·세출)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4조(세입·세출) ②.....융자금 및 기타 경비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주소도로명개정승인(안)

심사보고서

2002. 3. 2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3월 4일 영등포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2년 3월 5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88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2년 3월 12일) 상정
제4차 위원회(2002년 3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정진)

가. 제안이유

-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부여사업의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작업이 2001년 12월 완료됨에 따라 새주소에 대한 주민 관심이 높아지고 일부 동에서 불합리한 새주소 도로명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어 구 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을 영등포구지명위원회 조례에 의거 구의회 승인받아 확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새주소 도로명 개정 : 15개 구간
 - 소로 : 2개 구간
 - 골목길 : 13개 구간